

### 가) 계약 시수 산정 기준

- ①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,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

### 나)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

- ① 예·체능 및 특성화 교과담당 강사

- 강사기준 : 교육과정 20%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
- 강사수당 편성기준 : 10,000원 ~ 100,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

※ 사업에 따른 별도 지침에 의함(주관부서에 문의)

- ②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

-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,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'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'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,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※ 출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, 단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 대회출전으로 수업 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「학교체육업무메뉴얼」 및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채용 가능

- 특수, 보건, 사서, 영양,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, 1일 22,000원 ~ 130,000원(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)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,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-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(2018.2.1. 이후)

구분	수당단가	적용 기준
가호	26,000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서벽지, 면단위 소재지 학교</li> <li>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</li> <li>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(자격증 관련 업무)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나호	24,000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읍단위 소재지 학교</li> <li>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</li> <li>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(채용분야와 동일한 업무)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(자격증 관련 업무)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</li> <li>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다호	22,000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</li> <li>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</li> <li>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(자격증 관련 업무)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(산학겸임교사등)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